

#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결과

심사구분 : 제 968회 예비심사

안전번호 : 제 2024-603호

안 건 명 :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정 개정안

위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정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 
심의·의결 하였음.

붙 임 :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정 개정안 규제심사  
결과

2024. 12. 30.

※ 동 확인증은 위 법령 제·개정안에 대한 것으로, 이후 입법과정에서  
내용이 변경되는 경우, 법령에 따라 반드시 규제조정실과 규제심사  
대상 여부에 관해 협의를 거쳐야 함.

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



<붙임>

「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정 개정안」 심사  
결과

안건 개요	심사 결과
<p>1.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( 신설 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공제조합 약관의 작성원칙 및 필수 기재사항에 대한 정의 및 공제상품의 개발 또는 변경 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승인절차, 제출서류 및 심사기준 수립</li><li>○ 결산결과에 따른 기본분담금 조정에 대한 원칙, 승인 신청 시 준수사항 및 기본분담금 조정에 대한 세부사항 정의</li><li>○ 자동차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공제조합이 자산을 운용하는데 있어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, 감독목적의 회계처리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회계상 적정한 지급준비금 적립을 위해 손해액 추산의 근거가 불확실한 건의 경우 표준손해액을 산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</li><li>○ 자본적정성 평가를 기존 연 1회에서 분기별 평가로 강화하며, 본부와 별도로 회계처리하여 관리하는 경우 각 지부별로 평가 기준을 적용</li><li>○ 자동차공제조합이 준수하여야 하는 내부통제기준과 경영공시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</li></ul>	<p>&lt; 비중요 규제 &gt;</p>